

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-13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11. .

제 출 자 : 동 두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공직자윤리법 개정(2011.10.30 시행)에 따라 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심사기준 근거 신설 (안 제3조의2)

○ 심사·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함

나.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신설 (안 제9조)

○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및 「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」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.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“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동두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
과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

1.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
3.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
취급의 승인

제3조 다음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심사기준)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·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
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법 제8조제6항의”를 “법 제8조제7항의”로 하고 “법 제8조제
11항의”를 “법 제8조12항의”로 한다.

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다른 법령의 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
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및 「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국가
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”은 “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”으로 “정부공직자윤리
위원회”는 “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과		기획감사실
입 안 자	실 · 과장 직위·성명	기획감사실장 홍 현 섭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감사팀장 최 용 덕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주무관 한지영 860-2055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·결정한다.	제3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·결정한다.
1.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	1. <u>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</u>
2.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<개정 2003.7.29>	2 (현행과 같음)
3.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	3.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
4.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	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설>	<u>제3조의2(심사기준)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·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</u>
<u>제6조(위원회의 회의등)</u> 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	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
1.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·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	1. 법 제8조제7항의 ----- ----- <u>제8조제12항의</u> ----- -----
2.~4.(생략)	2.~4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<u>제9조</u>(위원회의 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규정으로 정한다 <신 설>	<u>제10조</u>(위원회의 운영규정) ----- ----- - ----- - <u>제9조</u>(다른 법령의 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및 「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”은 “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”으로 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”는 “동두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”로 한다

현 행	개정안
제0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·결정한다. 1.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. 법 제8조 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. <u>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</u> 4.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(생략) < 신설 > 제0조(수당등) 위원회의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,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 신설 >	제0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·결정한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</u> 4.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(현행과 같음) 제0조(심사기준)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·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. 제0조(수당등) 00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제0조(다른 법령의 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및 「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”은 “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”으로 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”는 “00공직자윤리위원회”로 한다.